

경영학교육혁신센터규정

2014.094.09.제정

2017.03.01.폐지

<경영학교육혁신센터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영학교육혁신센터(이하 “혁신센터” 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혁신센터는 경영학교육인증과 경영대학 각 학과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획, 심의, 실행, 평가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.

제3조(조직) ① 혁신센터에는 경영학교육혁신센터장(이하 ‘센터장’ 이라 한다)을 두며,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② 혁신센터에는 경영학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,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, 경영학교육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.

③ 혁신센터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팀(과) 등을 둘 수 있다.

제4조(경영학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) ① 경영학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는 경영학교육혁신센터장, 경영대학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학장 또는 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과별 교수 1인 내외의 임명직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경영학교육혁신센터장이 된다.

② 경영학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특성화된 경영학교육과정 및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
2. 경영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수립 및 실행
3. 경영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의 목표설정 및 평가
4. 경영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의 예산에 적합한 기자재 및 재료 도입 방법 결정
5. 경영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의 기자재 및 재료 도입에 대한 기술적 검토
6. 기타 경영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위원장은 경영학교육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, 산학협력위원 등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) ①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는 경영학교육혁신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경영대학 소속 전체 학과의 학과장을 위원으로 한다.

②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경영학교육인증 준비를 위한 제반사항
2. 경영학교육인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경영학교육인증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4. 경영학교육인증 교과과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경영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6. 경영학교육인증 프로그램별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경영학교육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경영학교육산학협력위원회) ① 경영학교육산학협력위원회는 경영학교육혁신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경영대학 소속 전체 학과의 학과장 및 산업체 인사를 위원으로 한다.

② 경영학교육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
2. 산학융합교과목 개발 및 선정
3. 기타 경영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추진관련 특별강의(산업체인사 특강 등), 현장실습 등에 관한 개발 및 심의

제7조(회의) 각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.